

Deloitte.

세무 및 관세 뉴스

2023년 1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주목할 만한 사항:

법인소득세 ("CIT")

- 과학기술개발기금에 대한 충당적립 및 사용하는 기업의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신규 시행규칙
- 계약자로 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CIT 인센티브의 적용
- 토지 임대 할당 비용
- 노동 재임대 비용

무역 및 관세

- 2022아세안 통합관세품목분류표 ("AHTN 2022")에 따라 베트남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특별우대 수출 관세표, 특별 우대 수입 관세표에 관한 17 개의 신규 시행령
-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원산지 긴 폴리에스터 원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검토
-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라인 수입에 대한 규정 업데이트
- 신규 Form의 형식과 다른 전자 C/O Form D 수락
- 수출가공기업("EPE")의 고정 자산, 기계 및 장비 임대/대여에 대한 지침
- 수입 원자재의 해외로 수출절차
- EPE는 완제품을 국내로 판매 가능

간접세 ("VAT")

- 수출가공기업에 판매에 대한 VAT세율
- 2022 년에 제공되었지만 2023년에 계산서를 발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VAT 8%세율의 적용조건

개인소득세 ("PIT")

- 부양가족 입증서류에 대한 규정개정
- 부양가족 입증서류 안내
- 타 지역에 종속적인 지점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출입국

- 출입국 일시중단 시행문의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외국인 전문가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FCWT

토지 임대료

- 2023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 결정 초안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신규 규정

과학기술개발기금에 대한 총당적립 및 사용하는 기업의 납세의무를 안내하는 신규 시행규칙

재무부는 2022년 11월 7일에 과학기술개발기금을 총당 적립하고 사용하는 기업의 납세의무에 관한 제67/2022/TT-BTC호 시행규칙을 발행하여 2022년 12월 23일부터 유효된다.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년 기업은 CIT 규정에 따라 기금을 출연하기 위해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 공기업: 3% ~ 10%
 - 기타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결정에 따라 최대한 10% 한도로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각 CIT 계산 기간별 결정되며 CIT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에서 공제된다.

- 기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금에 출연된 소득에 대하여 CIT 및 해당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 기금의 부적절한 사용, 또는
- 기업이 5년의 기간동안 기금을 사용하지 않거나 70%를 미만으로 사용함

기업이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3-6/TNDN호 Form에 따라 기금의 설정, 이전 및 사용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CIT 확정신고의 기한과 동일한다.

*(재무부의 2022년 11월 11일
제67/2022/TT-BTC호 시행 규칙)*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계약자로 부터 받은 보상금에 대한 CIT 인센티브의 적용

-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손금산입이 불가능하다.
- 계약자로 부터 받은 계약위반 보상금은 투자허가서상 등록된 비즈니스 활동의 소득이 않기 때문에 다른 소득으로 간주되며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없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3년 01월 06일
제/189/CTHDU-TTHT호 OL)

노동 재임대 비용

회사는 제품 포장공정을 수행하기 위해 노동 공급 업체의 근로자를 임대한다. (노동 공급업체는 조건부 사업활동 규정에 따라 계절 근로자의 공급할 자격이 있다). 매월 노동 공급 업체가 근무시간을 근거하여 회사에 서비스 영수증을 발행하면 규정조건을 충족한 해당비용은 세무상 공제 가능하다.

(Hai Phong 세무국의 2022년 12월 20일
제4566/CTHPH-TTHT호 OL)

토지 임대 할당 비용

회사가 국가의 토지를 임대하지만 해당 토지 면적을 회사의 생산사업활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토지임대 비용은 세무상 공제가 불가능하다.

(Hai Duong 세무국의 2023년 01월 03일
제/16/CTH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indirect tax”) 지침 문서

수출가공기업에 판매에 대한 VAT세율

회사가 비관세구역 (수출 가공 구역)에 소재한 기업에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물품이 비관세구역안 에서 소비되며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 1조 , 2항에 명시된 경우에 속하지 않고 제219/2013/TT-BTC호 시행 규칙 제9조, 2a항에 의한 조건을 충족하면 VAT 0%세율이 적용된다.

회사가 수출품에 대한 절차를 완료한 후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13조, 3c항에 따라 수출품에 대한 VAT 계산서를 발행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01월 04일 제386/CTHN-TTHT호 OL)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VAT 8%세율의 적용조건

서비스는 2022년2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의 기간에 제공 및 완료되며 해당 세금계산서가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발행된 경우 (서비스 완료 또는 대금 지급 시점 중 빠른때 계산서 발행)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VAT 8%가 적용된다.

(Da Nang 세무국의 2023년 1월 4일 제37/CTDAN-TTHT호 OL)

2022 년에 제공되었지만 2023년에 계산서를 발행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VAT

제15/2022/ND-CP호 시행령에 따라 VAT8%의 적용대상인 물품 및 서비스는 2022년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2023년 1월 1일부터 VAT8%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다. 대신에, 2022년에 판매되었지만 2023년에 계산서를 발행된 계약, 서비스 및 물품의 경우를 포함하여 VAT 10% 가 적용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2년 12월 29일 제20935/CTBDU-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신규 규정

부양가족 입증서류에 대한 규정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79/2022/TT-BTC호 시행령은 제111/2013/TT-BTC호 시행령의 부양가족 입증서류에 대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일반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호적등본의 제거 등 주요 신규 거주법에 따라 신분증 및 기타 관련서류를 규정한다.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은 g.7 점을 추가한 것이다 (이전에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조 1항의 g 점에 포함되지 않았음): "국세청이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와의 데이터 연결 완료를 발표한 날부터 부양가족과 관련 정보가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있는 경우 납세자가 상기 언급한 입증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부양가족 증명을 위해 제111/2013/TT-BTC 1호 시행규칙 제9조 1항 g점에 따라 주민등록증 대신 신분등록증을 제출 가능하고 호적등본 대신 거주상태 확인서 또는 신분등록번호 통지서를 제출 가능하다.

(재무부의 2022년 12월 30일 제79/2022/TT-BTC호 시행령)

부양가족 입증서류 안내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의 경우 근로자가 규정조건을 충족하고 부양가족 입증서류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만 부양가족을 등록 가능하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은 의지할 곳이 없는 개인이라야 하며 형제, 자매, 자녀 등 부양할 수 있는 친척사람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불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2월 29일 제65356/CTHN-TTHT호 OL)

타 지역에 종속적인 지점에 대한 PIT 신고 및 납부

회사가 타 지역에 종속적인 지점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PIT를 원천징수하고 제05/KK-TNCN호 양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고 지점이 소재한 지역의 세무국에 대한 세금할당 부록을 첨부하여 본사의 관리 세무국에 제출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2년 12월 19일 제62788/CTHN-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출입국 (“Immigration”) 지침 문서

출입국 일시중단 시행문의

출국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직접 관리 세무국의 지도자가 지역의 실제상황과 세무관리상황을 근거하여 출국 일시중단 경우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부채회수 불가로 출국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세무국은 부채회수 불가능한 납세자가 납세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 규정에 따라 출입국 관리기관과 협력해서 납세자에 대한 출국 일시중단 조치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철회된 기업에 대한 출국 일시중단에 대해서는 조세행정 결정을 강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법적 대표자인 개인은 출국 전에 납세 의무를 완료하여야 하며 출입국 법규정에 따라 출국 일시 금지 될 수 있다.

출국 일시중단 취소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완료한 경우 세무당국은 24근무 시간내에 출국 일시중단 취소 통보서를 발행하여 출입국 관리기관에 발송해야 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12월 22일
제5590/TCHQ-TXNK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외국인 전문가에게 지급된 비용에 대한 FCWT

한국 본사와 베트남 자회사간에 체결한 인력 지원 계약에 따라 전문가가 베트남에 파견되는 경우 (전문가는 한국 본사의 직원이며 베트남 자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전문가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동안 항공료, 숙박비, 여행비 등 베트남 회사가 지급해 야한 비용에 대해서는 베트남 회사가 규정에 따라 FCWT를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베트남 회사는 베트남영토밖에 소재한 서비스 공급업자에 비행기값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가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도 FCWT과세된다.

(Bac Ninh 세무국의 2022년 12월 27일 제 4248/CTBNI-TTHT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토지 임대료 (Land Rental) 신규 규정

2023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 결정 초안

정부는 기업과 개인의 생산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토지 및 수면 임대료 감면 결정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 적용 대상은 연간 임대료 납부 형태로 국가의 토지, 수면을 직접 임차한 단체, 단위, 기업, 가족사업자, 개인이다.
- 제안된 감면수준은 2023년에 납부해야 할 토지 및 수면 임대료의 30%이며 전년도 임대료 및 연체이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토지 또는 수면 임차인이 규정에 따라 토지/수면 임대료 감면 및/또는 보상 및 현장정리 공제를 받은 경우 30% 감면은 규정에 따른 감면/공제 후 납부해야 할 임대료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감면 신청 서류는 2023년 토지/수면 임대료 감면 신청서, 토지/수면 임대 결정서 사본 (또는 토지/수면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유관기관의 토지사용권과 주택 및 기타 토지부착자산 소유권의 권리증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는 지역 세무 당국, 경제구역관리위원회, 하이테크 관리위원회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유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신규 규정

2022아세안 통합관세품목분류표 ("AHTN 2022")에 따라 베트남의 양자 및 다자간 무역 협정/자유 무역 협정에 따라 특별우대 수출 관세표, 특별 우대 수입 관세표에 관한 17 개의 신규 시행령

정부는 2022년 12월 30일에 2022년 ~ 2027년 기간의 무역 협정/자유 무역 협정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우대 수출 관세표, 특별 우대 수입 관세표에 관한 17 개의 시행령을 공표하였고 이 시행령들이 서명날에로부터 유효되며 재무부의 2022년 6월 8일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에 규정된 AHTN 2022에 따른 베트남의 수출입 물품 항목과 일치한다.

관세총국은 2022년 12월 29일 제5731/TCHQ-TXNK호 OL를 발표하여 HS 코드 확인은 제31/2022/TT-BTC호 시행규칙 및 2022년 11월 17일 제4891/TCHQ-TXNK호 OL에 첨부된 세부참고내용을 근거하도록 안내한다.

AHTN 2022에 따른 MFN 및 FTA 관세 적용에 대한 딜로이트 [뉴스](#)를 참조하십시오.

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중국 원산지 긴 폴리에스터 원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검토

산업통상부는 2022년 12월 30일에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중국 원산지 긴 폴리에스터 원사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의 첫 번째 검토에 관한 제2954/QD-BCT호 결정을 발표하였고 HS 코드가 5402.33.00, 5402.46.00 및 5402.47.00인 제품을 포함한다. 상기 제품에 대한 현행 반덤핑 관세율이 3.36%에서 17.45%까지 적용된다.

검토 대상기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다. 검토기간은 검토 결정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3개월미만으로 1회 연기 가능하다.

(산업통상부의 2022년 12월 30일 제2954/QD-BCT호 결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신규 규정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라인 수입에 대한 규정 업데이트

국무총리는 2022년 12월 20일에 중고 기계, 장비 및 기술라인 수입에 대한 제18/2019/QD-TTg호 결정을 수정, 보완하는 제28/2022/QD-TTg호 결정 ("제28호 결정")를 발행하였으며 2023년 3월 1일부터 유효된다.

제28호 결정의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하이테크 업체 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법에 규정된 특별우대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프로젝트는 중고 기술라인을 일반적인 방식 또는 단순화 방식으로 수입 가능하다.
- 수입업자는 기술 라인인 첫 선적이 배달된 날로부터 12개월내에 점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점검 증명서 제출은 1회만 연기 가능하며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중고 기술 라인에 대한 기술 점검은 수출국에서 라인이 운영중인 상태에서 수행해야 한다. (하이테크 업체 또는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프로젝트 또는 투자법에 규정된 특별우대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 받은 프로젝트에 대한 수입품 제외함)
- 수입 절차에 사용되는 문서양식은 제28호 결정의 부록 III에 업데이트된다.
- 제18/2019/QD-TTg호 결정의 부록 I에 따른 중고 기계 또는 장비의 수명 목록에 속한 물품의 HS 코드가 수정된다.

(국무총리의 2022년 12월 20일 제28/2022/QD-TTg호 결정)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Trade & Customs) 치짐 문서

신규 Form의 형식과 다른 전자 C/O Form D 수락

관세총국의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 국가 단일 창구 시스템에서 발행된 C/O Form D 또는 발급 기관의 웹사이트 조회를 통해 전자 서명을 사용하는 C/O의 경우, 제10/2022/TT-BCT호 시행규칙에서 발행된 신규 C/O Form의 형식에 비해 차이가 있는 경우 C/O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C/O 인쇄본 (서명 및 날인됨)의 검사는 2022년 5월 12일 제1683/TCHQ-GSQL호 OL에 따라 수행한다.

(관세총국의 2022년 11월 14일 제4832/TCHQ-GSQL호 OL)

수입 원자재의 해외로 수출절차

회사가 이전에 수입한 원자재를 해외로 판매형식으로 청산하는 경우 사용 목적 변경 신고 (A42 모드)를 수행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베트남에서 미가공 원자재 재수출 절차 (B13 모드)를 수행해야 한다.

재수출 물품의 원산지가 수입 물품이거나 베트남에서 가공되지 않은 것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통관 후 심사를 실시하고 규정 세금정책을 적용한다.

(관세총국의 2023년 1월 4일 제39/TCHQ-GSQL호 OL)

수출가공기업("EPE")의 고정 자산, 기계 및 장비 임대/대여에 대한 지침

기획투자부는 EPE의 고정자산, 기계, 장비 임대와 관한 관세총국의 2022년 9월 20일 제3879/TCHQ-GSQL호 OL에 대하여 회신하는 2022년 11월 15일 제8256/BKHDT-QLKKT호 OL을 발행하였다. 따라서 EPE가 다른 기업에 기계, 장비 및 물드를 임대하기가 금지되지 않다. 다만 임대 자산,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세금 정책이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임대 기계, 장비가 EPE의 수입 활동과 상관이 없다.

(기획투자부의 2022년 11월 15일 제8256/BKHDT-QLKKT호 OL)

EPE는 완제품을 국내로 판매 가능

EPE는 세금정책 및 수출물품과 관련된 기타 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완제품을 국내 시장에 판매 가능하다.

(하이퐁 관세국의 2023년 1월 5일 제145/HQHP-GSQL호 OL)

Contact us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Son Won Sik
KSG Director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Kim Sun June
KSG Director
+84 90 119 7014
sunjunkim@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